

# 新規性と進歩性判斷

## 特許出願 및 審判請求時의

文 滄 華  
<辨 理 士>

이 世上에 없던 “物”을 最初로 生産해내는 “方法”이나 그 “물”을 생산해내는 “裝置”라고하여 반드시 特許權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實用新案法에서나 意匠法에서도 이에 準하여 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원래 工業所有權法이 생긴 理由는 各 法의 目的規程인 各 第1條에서 規定한 바와같이 技術의 進歩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産業政策 또는 社會政策上 規制를 要하는 部分에 限하여는 아무리 新規性と 進歩性을 갖춘 發明이나 考案이라고 하더라도 特許權이나 登錄權을 賦與할 수 없게 法으로서 規定하고 있는바 그 關係法規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特許를 받을수 없는 發明

特許法 第4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發明에 대하여는 제6조의 規定에 不拘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1. 飲食物 또는 嗜好物의 發明
2. 醫藥 또는 2 以上の 醫藥을 混合하여 1의 醫藥을 調製하는 方法의 發明

3.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4.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5. 物質自體가 지니는 性質에 따르는 用途의 發明
6.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害할 餘려가 있는 發明

### 實用新案登錄을 받을수 없는 考案

實用新案法 第4條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高안에 대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 또는 勳章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高안
2. 公衆의 질서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에 해가 있을 餘려가 있는 高안

###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意匠法 第3條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意匠에 대하여는 제5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 國章, 軍旗, 勳章, 褒章, 記章 其他 公共機關 등의 記號와 外國의 國旗, 國章 또는 國際機構 등의 文字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
2. 公衆의 질서나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할 餘려가 있는 意匠
3. 他人의 業務에 關係되는 物品과 혼동을 가져올 餘려가 있는 意匠

위 特許法中 特記해둘 것은 그 規定에 食品과 記號物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는바 食品과 記號物은 日常生活에 없어서는 不行 必要不可缺의 必須物이므로 萬一 이들에게 獨占權을 認定할 경우에는 不當한 高價를 國民 모두가 치루어야 되는 威脅을 느끼게 된다.

故로 “물” 자체에는 特許權을 인정하지 않도록 規定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물”을 제조하는 方法 자체에 대하여는 이 規定이 該當되지 않는다. 이유인즉 食品이나 記號物 자체에 特許權을 부여하는 경우와 같은 弊端은 없거나 稀少하기 때문이다.

食品 또는 記號物 자체에 特許權이 부여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製造方法에 特許權의 効力이 미치지 못하나 “물”을 제조하는 方法 자체에 限하여 特許權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方法 및 그 方法에 의하여 製造生産되는 물에 한하여 特許의 効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他方法에 의해 제조되는 “물”에는 効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데 緣由한다.

(參考로 附記하면 飲食自體에 特許權을 인정치 않고 있는 나라는 30餘個國이 된다)

의약에 대하여 特許權을 부여치 않는 이유는 食品

의 경우와 完全同一하다. 의약자체에 特許權不認定國家는 70餘個國 임을 참고로 부기한다).

또한 化學方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이나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國家産業政策上的 이유인 것이다.

즉 이들 발명은 多額의 研究費와 多數의 研究者의 協力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事件이 充分히 具備되지 않고 있는 現時點에서 이들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들에 관한 발명의 모든 것이 先進國에 의하여 占領되어 이들에 관한 우리나라 産業分野에 重壓을 받게 되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 特許要件

特許法 第6條 ① 産業上利用할 수 있는 발명을 한자는 다음에 揭記한 발명을 除外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然히 實施된 발명

2. 特許出願前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領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발명

다만 外國에서 領布된 간행물의 種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特許出願前에 그 발명이 屬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자가 前項 各號에 揭記한 발명에 의하여 容易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實用新案登錄要件

實用新案法 第5條 ① 産業上利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의 形狀 構造 또는 組合에 관한 高안을 한자는 다음에 제기한 高안을 제외하고 그 高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實用新案登錄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然히 實施된 高안

2. 實用新案登錄출원 전에 國內 또는 國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高안, 다만 外國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種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實用新案登錄출원 전에 그 高안이 속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자가 前項 各號에 제기한 高안에 의하여 極히 容易하게 高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高안은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登錄을 받을 수 없다.

### 意匠登錄要件

意匠法 第5條 ① 公業上 이용할 수 있는 意匠考案을 한자는 다음에 제기한 意匠高안을 제외하고 그 意匠

高안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意匠登錄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然히 實施된 意匠

2. 意匠登錄출원 전에 國內 또는 國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意匠

다만 外國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種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前 各號에 제기한 意匠에 유사한 意匠

② 登錄출원 전에 그 意匠이 속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자가 前項 各號에 제기한 意匠에 의하여 容易하게 創作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意匠은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第6條(類似意匠) ① 意匠權者 또는 意匠登錄出願人은 自己의 登錄意匠이나 意匠登錄出願한 意匠에만 유사한 意匠(以下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類似意匠으로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類似意匠에만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는 同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工業所有權法(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上 眞正한 考案者나 發明者가 그 高안이나 발명을 公開하였을 경우에는 新구성이 喪失되어 특허나 登錄권을 받을 수 없음이 原則이나 아래와 같은 例外規程이 있음을 참고로 제기한다.

### 發明의 新規性 擬制

特許法 第7條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六月以內에 特許出願을 하면 그 발명은 新구성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자가 그 발명을 試驗하기 위하여나 學術團體의 研究모임에서 發表하기 위하여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反하여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자가 政府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開設하는 博覽會 및 政府 또는 지방공동단체의 인가를 받은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出品함으로써 前條 第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자가 그 발명을 政府의 인가를 받아 國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出品함으로써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 前項의 規程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특허출원과 同時에 特許廳長에 提出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서류를 特許出願日로부터 30日 以內에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考案의 新規性 擬制**

實用新案法 第6條 ①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實用新案出願을 하면 그 고안은 신구의 것으로 본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기 위하여나 학술단체의 연구모임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의 고안을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 때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및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의 인가를 받은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고안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國外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실용신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意匠의 新規性 擬制**

意匠法 第7條 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意匠考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고안을 신구의 것으로 본다.

1.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사고안을 시험하기 위하여나 학술단체의 연구모임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第5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第5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한 때

3.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및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第5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가 그의 의장고안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國內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한 때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의장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三陽타이어

商號를 錦湖타이어로 바꾸

三陽타이어株式會社(代表: 朴祥求)는 6月10日 光州工場에서 臨時株主總會를 갖고 商號를 錦湖타이어로 바꾸었다.

金星社

家電製品綜合展示會

株式會社 金星社(代表: 朴勝察)는 6月 8日부터 25日까지 創立20周年 紀念으로 美都波百貨店 4層 장미홀에서 金星家電製品綜合展示會를 열었다.

金星社

龜尾電子工高에 支援金

株式會社 金星社(代表: 朴勝察)는 龜尾電子工業高等學校와 姉妹結緣을 맺고 年間 6,900萬원의 敎員指導費등을 支給키로 했다.

三養食品

江原 平昌에 診療所 建立

三養食品工業株式會社(代表: 全仲潤)는 5月 23日 醫療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僻地住民들의 保健診療를 위해 江原道 平昌郡 太和面에 醫療法人 太和醫院診療所의 起工式을 가졌다.

太平洋化學

成德女中·女商高 懸板式

太平洋化學工業株式會社(代表: 徐成煥)는 6月 10日 江南區 千戶洞所在 太平洋學院 成德女中·女商高的 懸板式을 가졌다.

現代自動車

全國巡迴敎育實施

現代自動車株式會社(代表: 鄭世永)는 5月 29日부터 7月12日까지 45일 간에 걸쳐 78年度 第2次아프터

서어비스 全國巡迴敎育을 實施했다.

종근당

忠正路에 社屋新築

주식회사 종근당(代表: 李鍾根)은 市內 西大門區 忠正路 3街에 地上 15層 地下 3層의 延建坪 6, 107坪規模의 社屋을 新築, 79年末 竣工할 豫定이다.

三養社

電話番號 變更

株式會社 三養社(代表: 金相廈)는 6月 4日부터 다음과 같이 電話番號를 變更했다. 261~0161~9, 261~1641~9.

三豐工業

電話番號 變更

三豐工業株式會社(代表: 朴成俊)는 浦項市 所在 會社의 電話番號를 2~7091~7094.로 變更하였다.